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법무부 소관)

2018. 4.

대한민국정부

- 목 차 -

(법무부 본부 : 35건)

1.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1(p)
2.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1(p)
3. 검사 비위사실을 사후 적발하였을 때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1(p)
4.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기소율을 제고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2(p)
5. 검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침해센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2(p)
6. 산업기밀 유출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2(p)
7.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대검찰청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것-----3(p)
8.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등의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외부의 전문성 있는 인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p)
9.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위기관리지침과 상황보고 시각의 조작 문제,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이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행적 조사 활동 방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3(p)
10.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4(p)
11. 검사의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정전담검사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4(p)
12. 국정농단과 관련된 묵인·방조, 유착관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4(p)

13. 홈앤쇼핑의 사옥매각, 인사채용 비리사건, 변창흠 사장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5(p)
14. 정부 부처에 파견한 검사 현황을 제출하고, 파견 검사 수를 줄일 방안을 보고할 것-----5(p)
15. 주요사건 수사 시 장관에 대한 수사진행 보고로 인하여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거나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p)
16. 전직 국무총리의 추징금 미납액 추징방안을 마련할 것--5(p)
17. 경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6(p)
18. 소방청 내에 사조직 '낙동회'의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6(p)
19. 구치소 접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7(p)
20. 교도소 소장이나 과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것-----7(p)
21. 교정시설 과밀화 및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정 교화 예산 증액에 노력할 것-----7(p)
22. 교정시설 내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정 공무원 증원방안을 마련할 것-----8(p)
23.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 법조타운 안에 교정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8(p)
24. 석면철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대한 석면철거 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것-----8(p)
25.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8(p)
26. 교도소 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의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9(p)
27.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범의 형사 처리절차, 구속영장의 청구 기준 등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9(p)

28. 치료감호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 시설 및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0(p)
29.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제도의 적극 활용을 모색할 것 -----10(p)
30. 검사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여타 조사들과 동일하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p)
31. 검사 인사에 개인의 능력에 기준을 두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는 인사원칙을 수립할 것 -----11(p)
32.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제도가 평등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11(p)
33. 장기난민구금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열악한 송환대기실을 개선할 것 -----11(p)
34. 미국의 실종자 추적시스템을 참고하는 등으로 44만명에 이르는 거주불명자의 소재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p)
3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에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 조직규모,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할 것 --12(p)

(대검찰청 : 8건)

1. 검찰청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검찰총장 업적집 제작 중지를 검토할 것 -----13(p)
2.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p)
3. 영장분실, 영장청구시한 도과 등 영장 관련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3(p)
4.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직위에 대한 검사 파견 중지를 검토할 것 -----13(p)
5. 자체재기 수사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14(p)
6. 대검찰청의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방안에 반영할 것 -----14(p)

7. 검찰이 도입한 구두변론 관리대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효율성 제고방안을 검토할 것-----14(p)
8. 검찰시민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심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14(p)

(서울고등검찰청 : 12건)

1. 민생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15(p)
2. 무리한 수사과 기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을 끊임 없이 고찰하고 엄격한 자세로 증거 판단에 임할 것 -----15(p)
3.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검사장 등 지휘부의 권한을 부장검사나 일선의 평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p)
4.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5(p)
5.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16(p)
6. 지난 정부 퇴진의 원인이 된 여러 비위에 있어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므로, 검찰 내부의 개혁을 하도록 할 것-----16(p)
7. 국정농단 사건, 전직 대통령 관련 비위사건이나 의혹, 국무총리 공직윤리 지원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 의혹, 인사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비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수사과 기소 등에 철저를 기할 것-----16(p)
8. 홈앤쇼핑 대표의 배임사건, 고양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분 쪼개기 매입 사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 등 조작의혹, 2007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된 KRS 사건, 청량리588 제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직폭력배 두목 비호 의혹 등 제기된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17(p)
9. 여러 검사에게 동일한 사건이 접수되어 각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지 않고 각 검사가 별도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 중첩되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18(p)

10.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하늘안추모공원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된 사건을 파악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18(p)
11. SAT 저작권법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내사, 수사 및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것-----18(p)
12. 오리온 회장 등 관련 분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19(p)

(대전고등검찰청 : 5건)

1.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사건, 갑을오토텍 단체교섭사건, 유성기업 사건, 대전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군산바이오 입찰비리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 -----19(p)
2.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19(p)
3. 형사조정 성립율과 조정회부율이 미진하므로, 형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19(p)
4. 특허범죄 수사를 위하여 도입한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범죄 조사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20(p)
5.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20(p)

(광주고등검찰청 : 8건)

1. 전주 장애인시설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면밀히 수행할 것 -----20(p)
2.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헬기 사격 지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20(p)
3.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20(p)
4.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20(p)
5.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1(p)

6.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1(p)
7.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초동수사를 철저히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의 공조를 활성화 할 것 -----21(p)
8. 보호관찰인력을 확대하면서 전자발찌 훼손이 감지된 경우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신속히 대처할 것 -----22(p)

(대구고등검찰청 : 4건)

1.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 수립할 것 -----22(p)
2. 벌금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2(p)
3. 독직폭행·가혹 사건 접수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매우 낮음을 감안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2(p)
4. 아사히글라스 사건 등 제기된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처리할 것 -----23(p)

(부산고등검찰청 : 6건)

1. DNA 시료채취에서 영장 발부가 필수적인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면밀히 구분하여 DNA 시료채취를 수행할 것 -----23(p)
2.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23(p)
3. 벌금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4(p)
4. 독직폭행·가혹 사건 접수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매우 낮음을 감안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6(p)
5. 엘시티 사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관련 선사 및 한국선급의 감독 의무 소홀 및 보험금 사기 혐의 등 제기된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처리할 것 -----26(p)
6.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영리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할 것 -----27(p)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정부법무공단 · IOM 이민정책연구원 : 7건)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부금 협약기관 외에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의 충실도를 제고할 것 -----28(p)
2. 132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할 것 -----28(p)
3. 다문화가족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이 제고되도록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상담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p)
4.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것 -----29(p)
5.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중복 및 감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비정규직으로 운용 중인 행정보조인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9(p)
6. 정부법무공단은 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공익소송 비율을 높이며, 출범 초기 천명한 정부 지원 없이 자립 도모의 관점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력 충원을 하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할 것 -----30(p)
7. IOM이민정책연구원은 합리적인 다문화정책 및 능력 있는 국적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재정안정성과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고, 홈페이지의 영문 제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1(p)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법무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18. 1. ~ '18. 3. 중 시민사회·전문가 등 세부주제별 협의를 진행하여, 5월 중 수립할 계획임 ※ '17. 10. 2차 공청회 결과를 반영, 수정·보완 실시
법무부 본 부	2.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사권 조정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국회의 논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법무부 본 부	3. 검사 비위사실을 사후 적발하였을 때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검사 인사는 능력, 성과, 리더십 및 청렴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책임자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법무부 본 부	4.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기소율을 제고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건처리기준’(’15. 12.)을 엄정 적용하도록 하겠음 ※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구공판하되, 동종전력, 행위태양,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죄질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 원칙 등 ○ 강화된 항소기준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의 경우 구형미달 판결선고시 전부 항소하겠음 ○ 향후에도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 수강·이수명령 등 부가처분을 적극 청구하여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법무부 본 부	5. 검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침해센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지방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을 통해 인권침해신고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17. 8.) -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운영지침」상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 ○ 각 청 홈페이지에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팝업창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겠음
법무부 본 부	6. 산업기밀 유출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산업기밀 유출과 구분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겠음(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와 협력) ○ 기술유출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7.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대검찰청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의 개정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2.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 피의자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 등 사전통지, 피의자의 신문내용 메모 등 ○ '17. 12.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 개정 건의 하였고, 현재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중 피의자의 기록을 허용하는 취지
법무부 본 부	8.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등의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외부의 전문성 있는 인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17년 하반기 3개 실·국장(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개 과장(인권정책과장) 직위에 외부전문가를 임용하였고, '18년 2월 평검사 12개 직위에 외부전문가 10명 및 내부 우수공무원 2명을 임용하였음 ○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직위에 대한 채용공고를 '18년 1월에 발표하여 금년 상반기 중 임용을 목표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 그 외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법무부 본 부	9.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 위기관리지침과 상황보고 시각의 조작 문제, 세월호 사건 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위기관리지침과 상황보고 시각 조작문제 등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서 수사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통령의 행적과 이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의 행적 조사 활동 방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은 해수부가 수사의뢰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의 고발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있음 - 현재까지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18. 2.)
법무부 본 부	10.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	○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침수 1부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법무부 본 부	11. 검사의 무리한 수사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정전담검사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17. 8. 주요 사건에 대하여 1·2심 무죄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의결하는 등 인사조치를 강화한 바 있음 ○ 앞으로도 검사인사에 있어 신상 필벌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음
법무부 본 부	12. 국정농단과 관련된 묵인·방조, 유착관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5명(22명 구속기소, 23명 불구속기소)을 기소하였고 현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3. 홈앤쇼핑의 사옥매각, 인사채용 비리사건, 변창흠 사장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	○ 홈앤쇼핑 사옥 사건, 인사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지휘하고 있으며, 변창흠 사장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확인될 경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법무부 본 부	14. 정부 부처에 파견한 검사 현황을 제출하고, 파견 검사 수를 줄일 방안을 보고할 것	○ 현재 파견 기관별 파견 필요성과 적정성을 분석하여 검사 파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 위주로 파견 검사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외부기관 파견 6곳 감축(국민안전처, 경기도, 충남도,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 앞으로도, 검사가 외부기관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하게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음
법무부 본 부	15. 주요사건 수사 시 장관에 대한 수사진행 보고로 인하여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거나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일선 청의 대검에 대한 보고범위를 축소하고, 보고시기도 ‘원칙적 사후 보고, 예외적 사전보고’로 규정한 ‘대검 보고 매뉴얼’ 마련, 시행(’18. 1.)
법무부 본 부	16. 전직 국무총리의 추징금 미납액 추징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직 국무총리 추징금 약 8억 8,300만원 확정(’15. 8.) - 영치금 250만원 국고귀속(’16. 1.) - ’17. 9.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국고귀속 - 현 미제액 약 7억 3,000만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예금채권 약 300만원 압류('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한 예금이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어 일부 은행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잔액 150만원 이하)에 해당될 수 있음 ○ 법원으로부터 위 압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추심하겠음 ○ 지속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파악한 후, 신속히 강제집행 실시하겠음
법무부 본 부	17. 경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검찰개혁위는 사법경찰관이 영장기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음 ○ 법무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사권 조정안을 검토하여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영장지휘와 관련하여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의 논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법무부 본 부	18. 소방청 내에 사조직 ‘낙동회’의 특정 지역 출신 직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확인 될 경우,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19. 구치소 접견권이 남용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 변호인접견 남용 제한 의원입법 긍정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수행이 아닌 심부름이나 회사 경영대리, 외부와의 연락 등 수사나 재판준비와 무관한 목적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2. 주광덕 의원 등 10명 발의 · '17. 2.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p>※ 의원입법에 긍정 대응</p>
법무부 본 부	20. 교도소 소장이나 과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것	<p>○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에서 소속기관 인사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급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p>
법무부 본 부	21. 교정시설 과밀화 및 노후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교정 교화 예산 증액에 노력할 것	<p>○ 법무부 자체 자구 노력을 지속추진 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석방 확대 등 과밀화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가석방 인원 : ('14) 5,361명→('15) 5,480명→('16) 7,126명 →('17) 8,247명→('18 예정) 8,881명 - 노후 교정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67,062 → ('19년) 98,003백만원 <p>○ 수용자 강사료 약 19억원이 교도 작업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17년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수용자</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교정교화 제고를 위해 '19년 예산 편성 시 증액 요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음</p> <p>※ ('18년) 7,358 → ('19년) 12,260백만원</p>
법무부 본 부	22. 교정시설 내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증원방안을 마련할 것	<p>○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관리 및 의료, 급식 등 처우향상을 위한 현장 실무인력 보강</p> <p>- 2018년 소요정원(증원) : 총128명</p> <p>※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등 108명, 수용자 의료처우 및 급식운영 등 인력 20명</p> <p>○ 교정공무원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18년 수시직제, '19년 소요정원)</p>
법무부 본 부	23. 지방법원이나 지방검찰청, 법조타운 안에 교정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우리부에서는 법조타운 건설시 교정시설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기재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
법무부 본 부	24. 석면철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정 시설에 대한 석면철거 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것	○ 우리부에서는 2013년도 교정기관 석면조사 후 현재까지 36개기관 29,575㎡ 석면을 제거하였으며, 2018년도는 석면제거 공사만을 위한 공사비는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나,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교정시설내 석면 자재를 제거할 계획임
법무부 본 부	25.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p>○ 교정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p> <p>- 외부 전문상담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p> <p>- 외부 전문상담, 긴급상담,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에 최적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7년 최초 운영, '18년 확대 개편(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신설)</p> <p>○ 스트레스 집중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 캠프과정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외부 전문상담' 연계 운영 <p>※ '18년 260명 참가 예정('17년 250명)</p>
법무부 본 부	26. 교도소 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 인력의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p>○ 최신 의료장비 도입 및 의료시설 개선 등 의무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2017년 13명(전문의 11명, 일반의 2명)의 신규 의무관을 채용하였으며</p> <p>○ 의무관 직급 상향 등 처우개선으로 유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여 결원을 최소화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의료인력 증원을 추진하겠음</p>
법무부 본 부	27.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범의 형사 처리 절차, 구속영장의 청구 기준 등에 대하여 실정에 맞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p>○ 소년사건처리지침 상 강력범죄, 상습 폭력범죄 등을 범한 소년에 대하여 구속하는 등 기준을 마련 하였음('16. 12.)</p> <p>○ 반복되는 청소년 강력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17. 12.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마련)</p> <p>○ 소년범은 교화·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하므로, 처벌과 교화·개선의 균형도 고려하여 대처하겠음</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무부 본 부	28. 치료감호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감호소 시설 및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병실 소규모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18년 3개년에 걸쳐 정원 50명인 11개 대형병실을 10인 이하 소형병실로 리모델링 진행 중 · '16년~'17년 6개 병동 완료, '18년 5개 공사 예정 ※ '18년 예산에 5개 병동 공사 예산 45억 원 확보, '18. 5. 착공 및 '18. 12. 준공 예정 ○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감호소 유희부지에 400명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 병동을 신축('21년 완료 예정), 소규모 병실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치료 · '18년 예산에 설계비 14.51억원 확보, '18. 4. 설계 착수 예정(치료감호소 내 유희부지 약 6,300㎡ 활용) ※ '19년 공사비 예산(129억 원) 확보 추진 ○ 치료 및 감호 인력 증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소요정원으로 의사 3명이 증원되었으며, 감호시스템 체계화 및 병동 인력 확충을 위해 외부 감호 전담인력(45명), 병동 운영 인력(15명) 증원 추진 · '18. 4. 외부감호 전담인력, 병동 운영인력 관련 소요정원안 행안부 제출 예정
법무부 본 부	29.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석방 제도의 적극 활용을 모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석방 운영 개선(안) 시행('1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환자, 장애인,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및 생계형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 완화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운영 개선(안) 지속 추진
법무부 본 부	30. 검사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여타 조사들과 동일하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자제하고 심야조사를 억제하여 수용자 소환 조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수사기관과 교정시설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사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음
법무부 본 부	31. 검사 인사에 개인의 능력에 기준을 두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는 인사 원칙을 수립할 것	○ 검사 인사는 능력, 성과, 리더십 및 청렴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책임자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신상필벌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법무부 본 부	32.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제도가 평등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 및 미국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제도가 평등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음
법무부 본 부	33. 장기난민구금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열악한 송환대기실을 개선	○ 난민인정신청자가 출입국항에서 난민심사 불회부결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출국 항공편 탑승시까지 출국대기실이나 환승구역에서 대기하게 됨 ○ 출국대기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최근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였고, 샤워 및 환기시설 등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개선하였으며, wifi를 설치하여 개인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법무부 본 부</p>	<p>34. 미국의 실종자 추적 시스템을 참고하는 등으로 44만 명에 이르는 거주불명자의 소재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거주불명자 소재 관리 개선 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소재추적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수집 - 행정안전부와 현행 거주불명자 소재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업무 협의 <p>※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무 내용이므로 이를 고려한 협의 필요</p>
<p>법무부 본 부</p>	<p>3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에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 조직 규모,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할 것</p>	<p>○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공수처 법무부 안에서는 공수처가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국회 출석 및 답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음</p> <p>○ 또한, 공수처 검사의 수는 관련 법안과 기존 특검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25명 이내로 하였고, 수사 대상자는 차관급 이상의 주요 정무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법관·검사, 전직 장성급 장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등을 추가하였음</p>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포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검찰청	1. 검찰청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검찰총장 업적집 제작 중지를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선 청 회식문화를 비롯하여 검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 지침」('17. 8. 법무부) 및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방안(이제는 바뀌요 정말로)」('17. 11. 대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검찰총장 업적집의 효용, 소요 예산 등을 확인하여 검토하겠음
대검찰청	2. 감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이의제기 절차등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제918호) 제정('18. 1. 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이의제기, 이의제기 감사에 대한 불이익금지 등 규정
대검찰청	3. 영장분실, 영장청구 시한 도과 등 영장 관련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영장의 경우 시한 내 처리하되, 담당자 외 직원에 의한 교차 점검, 시한임박 알림 등 KICS 시스템 보완 및 개선, 영장 보관시설 정비,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조치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대검찰청	4.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직위에 대한 검사 파견 중지를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파견 기관의 업무 내용, 근무 실태 등을 기초로 파견 필요성과 적정성을 분석하여 검사 파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 위주로 파견 검사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새 정부 출범 이후 외부기관 파견 6곳 감축(국민안전처, 경기도, 충남도, 부산시, 광주시, 인천시) ○ 외부기관에 검사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하게 파견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점검 예정
대검찰청	5. 자체재기 수사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신속한 오류 시정 가능성(장점)과 항고청의 판단을 구하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할 우려(단점)가 공존하므로 자체재기 수사제도가 사안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음
대검찰청	6. 대검찰청의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방안에 반영할 것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 정보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정보의 ‘수집’ 부서와 ‘검증’ 부서를 분리 하여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함 ○ 정치사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범죄와 무관한 동향정보」의 수집· 관리를 전면 금지하였음
대검찰청	7. 검찰이 도입한 구두 변론 관리대장이 유명 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 구두변론 관리대장은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대장 작성 현황에 대하여 분기별 통계보고토록 함 ※ '17. 4.부터 정형통계 구현 등 효율성 제고 조치 ○ 기타 외부의 수사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 ○ 일선 청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예정
대검찰청	8. 검찰시민위원회가 직권 으로도 심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검찰시민 위원회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대상의 대폭 확대, 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항고심사위원회 와의 통합, 심의정족수 완화 등 각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추진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1. 민생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검에 형사부 1개를 증설하고 수원 등 6개 수도권 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민생사건 관련 부서의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음('18. 2.) ○ 향후에도 민생침해사범 수사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
수원지검 춘천지검	2.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검찰권 행사의 정당성을 끊임 없이 고찰하고 엄격한 자세로 증거 판단에 임할 것	○ 모든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과 상당성을 갖추고 인권이 존중되는 수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검사장 등 지휘부의 권한을 부장검사나 일선의 평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수사의 효율성과 자율성, 검찰권 행사의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권한 위임 범위를 검토하겠음
	4.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인의 조사 중 메모를 허용하고 구금 피의자 소환일시를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였음('17. 9. 서울중앙지검) ○ 개정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청에서 변호인의 메모 허용, 부당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허용, 신문 중 피의자 요청시 조언 허용하도록 제도개선하였음('17. 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5.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향후에도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음 ○ 현재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진행 경과에 따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예정임
	6. 지난 정부 퇴진의 원인이 된 여러 비위에 있어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므로, 검찰 내부의 개혁을 하도록 할 것	○ '17. 9.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되어 여러 개혁방안들을 논의하는 등 검찰 내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그 외에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내부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7. 국정농단 사건, 전직 대통령 관련 비위사건이나 의혹,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국가정보원 및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 의혹, 인사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비리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에 있고,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8. 홈앤쇼핑 대표의 배임 사건, 고양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분 쪼개기 매입 사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 등 조작의혹, 2007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된 KRS 사건, 청량리588 제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직폭력배 두목 비호 의혹 등 제기된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	<p>[홈앤쇼핑 대표의 배임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음 ○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사건처리할 예정임 (서울남부지검) <p>[고양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분 쪼개기 매입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4. 고발장을 접수한 후, 고발인 측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18. 1. 불기소 처분함 (의정부지검) <p>[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순위 등 조작의혹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현장 조사 및 관련자 조사 등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검색순위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산정되고, 아무런 조작이 없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17. 11. 6. 불기소 처분함 (서울중앙지검) <p>['07년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된 KRS 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7. 법무부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사범공조를 요청하여 양국 간 사범공조가 진행 중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수원지검) <p>[청량리588 제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직폭력배 두목 비호 의혹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폭력조직 두목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기소하여 재판 중이며, 추가 비리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임 (서울북부지검)
	9. 여러 검사에게 동일한 사건이 접수되어 각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지 않고 각 검사가 별도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 중첩되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동일 죄명으로 입건되었거나 이미 처분받은 사안에 대해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 후 송치하도록 사경에 공문을 시행하였음('18. 3. 서울중앙지검) ○ 검찰도 사건처분하기 전에 동일 죄명 사건의 처리 내역을 확인하여 중첩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10.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하늘안추모공원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에도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된 사건을 파악하여 엄정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양권 사기 등 고소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17. 12.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임
11. SAT 저작권법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내사, 수사 및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사 및 수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어 기소된 것임을 확인하였음 ○ 재판 과정에서 미국 ETS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저작물 원본을 확보하였고, 미국 담당자도 제출된 증거가 ETS 송부자료가 맞다고 증언하는 등 공소유지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고검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2. 오리온 회장 등 관련 분쟁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	○ '17. 7.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사건 수사과정에서 서울고검이 '18. 2. 재기수사를 명함에 따라 현재 계속 수사 중인 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음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1.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사건, 갑을오토텍 단체 교섭사건, 유성기업 사건, 대전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 군산바이오 입찰비리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 2.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3. 형사조정 성립율과 조정 회부율이 미진하므로, 형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 군산바이오 입찰비리 사건의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음 ○ 대전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18. 2. 기소하였음 ○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항고사건에 대해 심의하였음 ('17. 12. 대전고검) ○ 항고사건을 원칙적으로 항고청이 수사하여 처분하는 직접경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항고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음 ○ 형사조정위원회 인적구성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의뢰하도록 독려하여 2018년 1월 의뢰율(5.6%→5.9%) 및 성립률(53.9%→57.8%)이 전년도 대비 향상하였음(대전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4. 특허범죄 수사를 위하여 도입한 특허기술변론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범죄 조사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기술변론절차는 기술 및 개발 과정 시연, 쟁점 정리, 전문가 자문, 검증, 대질조사 등 모든 수사과정을 한 기일에 진행하는 One-Stop 수사 절차로서 복잡한 특허기술 사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건관계인의 만족도가 높음('17. 10.) ○ '18. 2. 5.자로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였음(대전지검)
	5.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실질적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음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 전주 장애인시설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면밀히 수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으로, 담당 검사가 공소유지를 충실히 하고 있음 ○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활동을 통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예정임(전주지검)
	2.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헬기 사격 지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前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다수 참고인 조사, 과거 군문서 확보·분석 등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임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임(광주지검)
	3.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8. 31. 전주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피고소인, 고소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 중에 있음 ○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임(전주지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4.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찰시민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17. 11.)
제주지검	5.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권 남용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 적절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해 수사지휘 전담검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장검사의 충실한 결재를 통해 합리적인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음 ○ 당일 지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5근무일 초과 지휘 시 반드시 차장 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지휘에도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통합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사지휘 과오 사례를 확인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수립·시행하겠음
	6.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 대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17. 12.) ※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언을 위하여 신문내용 수기 기록 허용, 구금된 피의자 소환 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와 장소 통지 등 내용
	7.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초동수사를 철저히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의 공조를 활성화 할 것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초동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통하여 수사 초동단계에서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한 적정처분, 피해아동 지원 등을 논의 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8. 보호관찰인력을 확대하면서 전자발찌 훼손이 감지된 경우 검찰 및 보호관찰소가 신속히 대처할 것	○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 대처하고 있음
대구고검 대구지검	1.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2. 벌금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독직폭행·가혹 사건 접수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매우 낮음을 감안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검찰시민위원회(위원 15명), 항고 심사회(위원 25명)를 통합하여 총 40명의 위원으로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명씩 4개 분과로 나누어 매주(수요일) 1회 항고, 송무, 공판 등 고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17. 12.) ※ 6회에 걸쳐 14건 17명을 심의(’17. 12. ~’18. 2.) ○ 향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처분한 대표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자체적으로 벌금 집행을 실적을 분석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담당자별 책임 관리제, 강제 집행 적극 실시 등 집행을 실적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하였음(’18. 3.) ○ 향후 지속적으로 벌금 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 또는 수형자들의 소란이나 지시 불응에 대해 교정공무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문제삼는 것으로, 수사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기소율이 낮았던 것으로 확인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구고검 대구지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주로 고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대구구치소 등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고소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허위 고소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남고소를 방지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음
	4. 아사히글라스 사건 등 제기된 사안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처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2. 21. 일부 불구속 기소, 일부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18. 1. 22. 항고제기, 대구고검 수사 중임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 DNA 시료채취에서 영장 발부가 필수적인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면밀히 구분하여 DNA 시료채취를 수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A 실채취 대상자 중 DNA감식 시료채취에 부동의하여 DNA감식 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울산지검 1건, 창원지검 11건으로 확인('17.) ※ 채취대상자 부동의 시 법원의 영장 필요 ○ 향후에도 DNA감식시료채취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5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54건을 심의하였고, 그 중 51건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동일하게 사건 처리하였음('17. 1. ~ '18. 2.) ※ 종국처분된 사건 중 시민위원회 의견 반영률 96.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라는 제도 취지에 중점을 두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시민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시민들의 참여경로를 확대하였고 여성위원의 비중을 42%로 늘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 하도록 개편하였음(’17. 12.)</p> <p>○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여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울산지검)</p> <p>○ 월 1회 정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하고, 통영시 행정과장,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 통영지부장 등 15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검찰시민위원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찰 시민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17. 9. 통영지청)</p>
	3. 벌금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p>○ ’17년 하반기 벌과금 집행실적 제고 방안 시행(’17.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과금 징수 평가제 도입 <p>○ ’18년 상반기 벌과금 집행실적 제고방안 시행(’18.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야간 특별근무 실시 △ 징수기동반 운영 △ 다양한 납부제도 홍보(부산지검) <p>○ 벌과금 집행을 81.60%로 동일 그룹(2그룹) 8개청 중 가장 높은 집행을 달성하였음(’17.)</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 최근 경기 불황으로 벌금 집행을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납부, 분납, 사회봉사 대체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안내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 하되 고액벌금(1억 이상 벌금) 및 시효임박 벌금미납자 등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여부, 부동산 및 동산 소유 여부 등 적극적인 사실 조회 및 별도 검거기동반을 편성 하여 '17. 하반기 고액벌금미납자 총 4명(벌금액 3,063,800,000원)을 검거하여 유치 집행하였음</p> <p>○ 향후에도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 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하는 고의적· 악의적인 미납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울산지검)</p> <p>○ 자체 벌금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시행('18.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실조회 및 집행기법을 통한 벌과금 집행실적 제고 · 미납자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 보험, 전화 및 인터넷,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주민조회 등 다양한 사실조회를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직접적인 벌과금 집행과 적극적인 납부독촉 병행 실시 등 (밀양지청)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p>○ 자체 벌금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시행</p> <p>- △ 집행인원 보충 △ 전자예금압류 등 강제집행 적극 실시 △ 각종 사실조회 및 유관기관에의 협조 요청으로 인한 지명수배자 소재 파악하여 적극적인 검거 △ 적극적인 납부 독촉 및 문자 발송 확대 (진주시청)</p>
	4. 독직폭행·가혹 사건 접수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매우 낮음을 감안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p>○ 독직폭행·가혹 사건으로 '16년 14건(41명), 2017년 12건(33명)이 접수되었고 그중 현재 4건이 수사 중이며 나머지 사건은 모두 불기소처분되었음</p> <p>○ 피고소인 및 피고발인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참작할 때, 고소·고발 접수 전 근거 없는 고소·고발로 인한 사회적 폐해, 허위내용을 고소·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책자 등을 비치하여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음 (울산지검)</p>
	5. 엘시티 사건, 스텔라 테이지호 침몰사건 관련 선사 및 한국선급의 감독의무 소홀 및 보험금 사기 혐의 등 제기된 사안들을	<p>○ 국정감사 이후 배덕광(전 국회의원), 현기환(전 청와대 정무수석) 항소심 유죄선고되는 등 공소유지 철저</p> <p>○ 이영복(엘시티 대표)에 대해 범인 도피한 수행비서를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사건 계속 수사 중임</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철저히 수사하는 등 처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각종 의혹에 대하여 시민단체 고발사건 등을 토대로 엘시티 사건 전반을 철저히 수사 중임 ○ 해경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 검찰은 관련자들 과실 및 침몰 원인, 보험금 사기혐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지휘하고 있으며, 향후 사건 송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임 (부산지검)
	6.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영리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 당시 창원지검 소속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의 내부익명 제보시스템 위탁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확인 ○ 법무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이권개입 금지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위반을 이유로 '18. 1. 2.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p style="text-align: right;">※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진행 중</p>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산하기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한법률 구조공단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부금 협약기관 외에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 업무의 충실도를 제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의 주요재원은 임금사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기금과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 구조에 관한 신한은행의 기금 등이 있고, 위 재원으로 영세민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국민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는 것으로 협약 기관 소속직원에 대해서 법률구조를 하는 것은 아님 ○ 공단은 올해 협약기관 출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무료법률구조대상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등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의 충실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한법률 구조공단	2. 132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2법률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하여 노후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전국 131개 사무소 직원에게 배정된 전화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함 ○ 전국으로 분산된 전화상담의 효율성 증대, 전담직원의 확보와 집중 교육을 통한 대기시간단축 및 상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대한법률 구조공단	3. 다문화가족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이 제고되도록 홈페이지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외국어 버전(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 사이버 법률상담 이용 안내문을 추가함('17. 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마련된 사이버 상담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이 제고되도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p>
<p>대한법률구조공단</p>	<p>4. 국선전담변호사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것</p>	<p>○ 현재 법무부에서 '19년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검토중에 있음</p> <p>○ 만약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공단이 수행하게 된다면 전담 변호사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선발절차를 마련·운용하겠음</p>
<p>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p>	<p>5.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중복 및 감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비정규직으로 운용 중인 행정보조인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p>	<p>○ 청소년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보호시설 환경 개선 및 신규 시설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재원마련에 노력하겠음 <p>※ 現, 청소년시설(3개소) : 서울서부지소(남자), 전남동부지소(남자), 광주남부지소(여자)</p> <p>○ 산하기관 감사 중복 및 누락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보호관찰과, 공단 자체 감사실 등 감사 주체간 감사 일정, 감사 대상·범위 공유 및 조율로 감사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겠음 <p>※ '18. 1. 공단 감사실(전담 감사인력 5명) 설치, '18. 2.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연간 감사계획 수립</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table border="1" data-bbox="853 264 1412 627"> <thead> <tr> <th>주체</th> <th>대상기관</th> <th>감사범위</th> </tr> </thead> <tbody> <tr> <td>법무부 감사담당관실</td> <td>충북지부 등 5개</td> <td>업무 전반</td> </tr> <tr> <td>공단 자체 감사실</td> <td>부산지부 등 11개</td> <td>"</td> </tr> <tr> <td>법무부 보호관찰과</td> <td>전 기관(26개)</td> <td>보조금 집행</td> </tr> </tbody> </table> <p data-bbox="790 649 1420 952"> ○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단 행정보조인력 9명 정규직 전환 완료 ※ '17. 12. 비정규직 전환 심의 완료(9명), '18. 2. 기재부에서 9명 전환 결정통보 </p>	주체	대상기관	감사범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충북지부 등 5개	업무 전반	공단 자체 감사실	부산지부 등 11개	"	법무부 보호관찰과	전 기관(26개)	보조금 집행
주체	대상기관	감사범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충북지부 등 5개	업무 전반												
공단 자체 감사실	부산지부 등 11개	"												
법무부 보호관찰과	전 기관(26개)	보조금 집행												
정부법무 공단	6. 정부법무공단은 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공익 소송 비율을 높이며, 출범초기 천명한 정부 지원 없이 자립 도모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인력 충원을 하려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p data-bbox="790 974 1420 1310">○ 인사위원회 및 서류·필기·면접 시험 위원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시기, 규모, 선발인원, 시험방법 등 채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채용에 노력하겠음</p> <p data-bbox="790 1321 1420 1713">○ 정부법무공단법의 고객제한으로 공익소송 수행에 한계가 있으나, 국가의 정당한 이익보호와 행정의 합법성 확보라는 설립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송실무자 교육 강화 등 공익적 기능 강화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음</p> <p data-bbox="790 1724 1420 2016">○ 공단은 경제적인 보수 제공 및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국가 등의 소송예산을 절감하고 증가하는 공적 법률수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p>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경쟁력 강화, 업무부담 해소 및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결원변호사 충원이 필요하나, 자체 수입만으로 인력충원·유지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1년 보조금 지원이후 매년 감축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운영 가능한 재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p style="text-align: center;">※ '11년 10억원 → '18년 4.1억원</p>
IOM이민 정책연구원	7. IOM이민정책연구원은 합리적인 다문화정책 및 능력 있는 국적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재정안정성과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고, 홈페이지의 영문 제공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연구사업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권에 관한 논의’, ‘국적제도 개선을 통한 국적이탈자 감소방안’ 등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중 연구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 2017. 12월 연구원의 기본사업 확대와 예산확보 등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시 자문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 ○ 연구원의 국문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영문홈페이지에 반영되지 못한 콘텐츠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적시에 업데이트하여 해외 이용자 및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음